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3. 6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2. 25. 김진천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9. 2. 25.
- 다. 상정일자 : 제2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9. 3. 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진천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현재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병역명문가 예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용료·주차요금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
신설(안 제4조제1항)
  - (1)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  - (2) 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  - (3)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  - (4) 그 밖에 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요금 등

2)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제2항)

(1)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, 6·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 초청

3)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 
(안 제5조제2항)

### 3. 검토보고 (최종의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병무청 훈령으로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서 정한대로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예우대상자의 지원과 선양에 노력하고자 하였음.

○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,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자 안 제4조(지원)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내용과 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(홍보)의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.

참고로 서울지방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병역명문가는 전국적으로 4,890대표 가문이 선정되었고 그 중 서울시는 685가문이고, 마포구는 21대표 가문으로 전국 대비로는 0.4%이고 서울시 대비로는 3.0%에 해당됨. [참고자료 <표 1~3> ]

<표 1> 병역명문가 선정 대표가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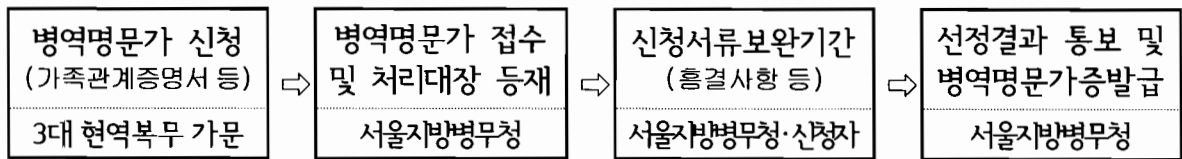
구분	전국	서울시	마포구	비고
대표가문 수 (비율, %)	4,890 (100)	685 (14.0)	21 (0.4)	2018.12.31.현재

※ 자료출처: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(대표가문 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)

〈표 2〉 감면내용 및 지원근거 주요사항

구 분	감면 세부내용	개정조례
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요금	주차요금의 100분의 20 할인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별표 1 비고에 24. 신설
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	마포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결정	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[별표] 2.수강료 나.감면기준 신설
구립 체육시설 사용료	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	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. 신설

〈표 3〉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절차



※ 처리기간 : 약 30일(신청일 익월 20일까지)

- 따라서,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서 정한대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부칙에서 관련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선양의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음. 이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이번 회기에 본 조례안이 의결·공포되더라도 ‘구립 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’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감면 범위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며, 아울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선양 및 신규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